

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다.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라.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5조 (통지의 효력)

- ①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이용자에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 변경 사항을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이의 제기)

- ① 이용자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연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Citibank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결제 및 담보대출 등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을 말합니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4.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
 6.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7.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
 8.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지"라 함은 인터넷뱅킹, 핀테크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결제 및 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바.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한국씨티은행

CR-A-796 (2009. 1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illegibl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제1조 (전자망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제공 및 제한)

① 은행은 전자망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변제 및 미결제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여 은행 간 정보공유를 원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한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작구를 생략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에서 수집된 미결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제도 이용을 아예와 같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구매기업의 전자망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제한

나. 기 발행된 전자망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판매기업의 외담대 취급 제한

다.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산정

라. 구매기업이 전자망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망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는 은행은 구매기업의 본 결제제도 이용 제한

① 같은 팀 만기 도래된 전자바식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바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② 구매기업이 결제관한 것을 서로 다를 수 개의 지급채구가 결합하는 경우 구매기업이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

① 2019년 10월 20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구매가점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구매가점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해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가점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시간까지 구매가점 운영하여야 합니다.

③ 2019년 10월 20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구매가점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시간까지 구매가점 운영하여야 합니다.

④ 2019년 10월 20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구매가점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시간까지 구매가점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구별가림은 등판과 제 3조에서 정한 용어를 제할한다.
② 구별가림은 등판과 제 3조에도 이용해야 하는 것을 판자 위치에서 확인 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점근체를 이용하여 전자부식 및 상매출판 권리를 신장하여야 합니다.
③ 등판은 전자부식 및 상매출판 권리를 판자 위치에서 정한 용어를 이용하여 조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상거래에서의 판매 및 구매)
구매자는 사람이거나 물건을 파는 판매자는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은혜이 수수료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점 및 영업점, 계사 가승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립니다.

[illegible]

제4조 (결재제도 이용예외의 행위)

① 이용자가 결재제도 이용예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나 서면으로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발행된 전자발식 외상매출채권 및 기취급된 외상매입채권과 당해 전자발식 외상매출채권 결제 및 외상대 상환까지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illegible]